

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,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.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, 헬싱키 선언, 한국간호사윤리강령과 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한다.

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(이하 학회)에서 제정한 연구, 출판,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 및 범위)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.

## 제2장 연구

제3조(연구수행)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
1.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,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.
  - 1)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- 2)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,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3)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4)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.
  - 1) 부정행위를 묵인,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
  - 2)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
  - 3)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
  - 4)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
  - 5)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

- 6)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
- 7) 본인의 학력, 경력, 자격,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
- 8)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9)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

제4조(연구보조원)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,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,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.

#### 제5조(연구대상자)

1.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.
  - 1)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.
  - 2) 연구의 목적 및 방법,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,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.
  - 3)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.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.
  - 4)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,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.
  - 5) 대상자가 증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.
  - 6)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.
  
2.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1)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(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)
  - 2)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
  - 3) 메타분석 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
  - 4) 기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
  
3. 환자/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 - 1)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.
  - 2)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,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.

#### 제6조(연구비)

1.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.
2.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.
3.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.